

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김미애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또는 공중이용시설의 시설
주가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장애인 등의 시설
이용 편의를 증진하려고 하는 것임(안 제16조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
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박 동 찬)